

2015.2.9

'관세법 시행령' 개정 요약 안내

1. '관세법 시행령' 개정

- 2015년 2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입업무 주요 내용 안내 드립니다.
- 시행일자 : 15. 2. 6. (금)

2. 주요 개정내용

수정신고 가산세 이자율 변경

- ▶ 이자율 - "2015.02.06 수입신고분부터(이후 수정신고시) 적용"
: 10만분의 13 → 1만분의 3(0.0003) 으로 개정

※ 참고 - 수정신고 가산세

: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+
부족세액 X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
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.0003

- ▶ 수정신고가산세 감면대상 구분 - "2015.02.06 수정신고분부터 적용"
*다만,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
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

구분	감면율
보정기간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	20%
보정기간 후 6개월초과 1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	10%
과세전적부심사 결정·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	50%

2015.2.9

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개정

- ▶ 관세법 101조 가공 또는 수리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 적용시, **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(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)**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**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**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**"가공 또는 수리 비용" 도 감면 가능**

*감면범위 : 수출물품신고가격, 왕복운임, 가공 또는 수리비용